

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근한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하고,
- 신설 민간위탁 사무뿐만 아니라 재위탁 및 재계약까지 관리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간 위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4조의3)
-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 규정 개정(안 제5조~제6조)
-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적용례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2. 10. 12. ~ 10. 17.) 결과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등에 대해 총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조례 개정으로 <민간위탁 관리위원회>를 신설하면 신규 위탁사무뿐만 아니라 재위탁·재계약 사항까지 민간 위탁 여부와 선정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어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·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,
- 소관 부서별로 시행하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주관 부서인 총무과가 총괄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민간위탁 심의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함.